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(박 학 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4-54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4. 24.

발 의 자 : 박학용, 조기만, 김현진,  
이종숙, 강선영

### 1. 제안이유

관내 체육시설 이용시 부과하는 부속설비 이용료 항목을 축소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등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며, 두자녀 이상 가정도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여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줄이고,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0조 및 별표7)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감면 대상 중 3자녀 이상 요건 삭제 및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 범위 확대(안 제10조제3항제6호)
- 나. 부속설비 사용료 항목 축소 및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사에 대한 전액 면제(안 별 표 7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
- 나. 협조부서 : 문화체육과
- 다. 입법예고 : 2024. 4. 24. ~ 4. 29.

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- 다. 보내실 곳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 
강서구의회(전화: 2600-1808, 팩스: 2620-0515)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연습사용료”를 “연습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
제10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강서구에 주소를 둔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동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해 30퍼센트

별표 7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시 설 명	기능별	사용(기준)시간별 사용료		일반기준
		음향장비 (3시간)	냉·난방비 (1시간)	
강서구민 올림픽 체육센터 · 마곡 레포츠센터 · 가양 레포츠센터 ·	체육관	15,000	30,000	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.

수명산 다목적체육관 · 공산 다목적체육관 ·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· 강서 다목적체육관	다목적실 (시청각실)	10,000	15,000	
마곡 실내 배드민턴장	체 육 관	15,000	75,000	
비 고	1.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: 30분 단위로 하며,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본다. 2. 토·일·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(09:00~18:00) 외 시간대 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.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. 4.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			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전용사용료와 <u>연습사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 &lt;단서 신설&gt;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<u>연습사용료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(신설 2004.11.30, 개정 2012. 7.18, 2015.6.24., 2018.6.27.)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강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</u></p> <p>7. ~ 13. (생략)</p> <p>④·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사용료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습사용료 및 부속설비 사용료</u>----- ----- . <u>다만,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7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강서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에 대해 30퍼센트</u></p> <p>7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·⑤ (현행과 같음)</p>

별표 7(부속설비 사용료)

시 설 명	기능별	사용(기준)시간별 사용료					일반기준
		음향 장비 (3 시간)	무대 (1회)	영상장 비 (1회)	냉난방 비 (1 시간)	심관대 (1회1 대)	
강서구민 울림 썩 체육센터 · 마 레포즈센터 · 가 레포즈센터 ·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· 공산 다목적체육관 (시청각실) ·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· 강서 다목적체육관	체육관	15,000	15,000	-	30,000	-	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.
마곡 실내 배드민턴장	체육관	15,000	30,000	-	75,000	10,000	
비 고	1.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: 30분 단위로 하며,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본다. 2. 토·일·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(09:00~18:00) 외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.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						

별표 7(부속설비 사용료)

시 설 명	기능별	사용(기준)시간별 사용료		일반기준
		음향장비 (3시간)	냉·난방비 (1시간)	
강서구민 울림 썩 체육센터 · 마 레포즈센터 · 가 레포즈센터 · 수명산 다목적체육관 (시청각실) · 공산 다목적체육관 · 화곡배수지 다목적체육관 · 강서 다목적체육관	체육관	15,000	30,000	기본시설 사용료의 일반기준을 적용한다.
마곡 실내 배드민턴장	체육관	15,000	75,000	
비 고	1. 기준시간 초과사용료 적용기준 : 30분 단위로 하며, 초과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에 초과시간이 기본시간에서 차지하 는 비율로 본다. 2. 토·일·공휴일 전 시간대와 평일 주간 시간(09:00~18:00) 의 시간대는 평일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함 3.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설비 사용료 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. 4.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			

**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**

제6조(생활체육시설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.

**□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**

제4조의2(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2., 2017. 12. 29., 2019. 10. 29., 2021. 6. 1., 2023. 11. 16.>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
2. 다음 각 목의 단체(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)가 주관하는 행사

가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

나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

다. 삭제 <2016. 8. 2.>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

4. 65세 이상의 사람, 장애인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
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

6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
7.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

**붙임2****최근 3년간(2021~2023년) 부속설비 사용료 수입 현황**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의 종류 및 부속설비 사용료 수입 현황

(단위: 만원)

구분	금액	감면 대상
제1호	2,998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기 또는 행사
제2호	982	서울특별시 강서구체육회에 등록된 단체 또는 강서구 관내 장애인단체에서 실시하는 연 2회 이하의 체육행사
제3호	-	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및 행사
제4호	922	관내 학교의 체육활동, 체육단체,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